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5. 29 선고 2023가단312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4. 5. 8.

판 결 선 고 2024. 5. 29.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는 동해시 D 시멘트벽돌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주택 84.37㎡를 철거하고, 위 토지 86㎡를 인도하며, 피고 C는 동해시 E 무허가건물 시멘트벽돌조 1층 26.80㎡를 철거하고, 위 토지 86㎡를 인도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동해시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원고 소유의 토지이고, 위 토지는 동해시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 등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피고 B는 D 토지에, 피고 C는 E 토지에 각 건물을 건축하여 위 각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D 토지 지상에 있는 피고 B 소유 건물(시멘트 벽돌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주택 84.37㎡)을 철거하고, D 토지 86㎡를 인도하며, 피고 C는 E 토지 지상에 있는 피고 C 소유 건물(무허가건물 시멘트 벽돌조 1층 26.80㎡)을 철거하고, E 토지 86㎡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 토지는 그 지목이 하천이고, 1998. 10. 8.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D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 B이고, E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 C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현자